

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학생생활 수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수칙은 학생생활관 관리운영규정(이하 규정)제8조에 의거하여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기간 중 건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) 이 수칙은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학생생활 수칙(이하 수칙)이라 한다.

제 3 조(적용범위) 이 수칙은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(학생생활아파트, 국제생활관 I, 국제생활관 II, 글로벌빌리지)에서 생활하는 전 입주생에게 적용된다.

제 2 장 입주와 퇴사

제 4 조(입주자격)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동서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교내외 행사에 의해 외부인의 입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5 조(입주대상) ① 국제생활관 I · II은 유학생 전용기숙사로서 본교에 재학중이거나 본 대학교 국제교류센터의 입학허가서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은 신입생 · 교환학생 등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고 국내학생은 글로벌빌리지 · 학생생활아파트에 입주를 허용한다.

② 단, 국제생활관 I · II에 국내학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 제18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그리고 국제생활관 I · II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유학생이 학생생활아파트 · 글로벌빌리지에 입주할 수 있다.

제 6 조(선발) ① 외국 유학생의 선발은 규정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재학생 선발은 입주생 모집공고 후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으로 선발한다. 단, 교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직전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았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 직전학기 성적으로 선발한다. 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선발한다. 모집공고 시기는 아래와 같다.

구 분	모집공고 게시시기
1학기	매년 1월경
하계방학	매년 6월경
2학기	매년 7월경
동계방학	매년 12월경

제 7 조(제출서류) ① 우선 선발대상자는 생활관 입주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생생활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한다.

②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주가 확정된 학생은 입주 시 주민등록등본,건강진단서,서약서를 학생생활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주가 취소된다.

제 8 조(생활관 배정) ① 생활관 배정은 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② 룸메이트와 생활습관 차이 등과 같은 문제로 학생 임의로 방을 변경할 수 없다.

③ 방변경을 원하는 경우 학생생활관 사무실에 비치된 ‘방변경신청서’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 단,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.

제 9 조(입실등록) 국제생활관 I · II 입주생은 건물 출입을 위해 신체인식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생활관 배정 시 받은 출입카드로 학생생활관 출입을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퇴사)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퇴사자는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퇴사를 명한다.

② 자원퇴사를 원하는 입주생은 퇴사 전에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생활관 기숙사 담당직원의 서명을 득한 후 기숙사 사무실에 제출한다.

- ③ 퇴사 시 지급품(열쇠,방카드)을 사무실에 반납하고 퇴사에 따르는 사무절차를 밟아야 하며
손실 및 망실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학생생활관 내 생활

제 11 조(준수사항) ① 학생생활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생활관 내 정숙 및 청결 유지
2. 전열기·TV·음향기기·버너 등 사용금지
3.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금지
4. 생활관 내 취사행위 금지
5. 도박·음주·폭행·절도금지
6. 외부인의 관내 출입 및 숙박제공 행위 금지
7. 시설물의 임의이동·변형·손상금지
8. 광고물 무단게시 및 유인물 무단 배포 금지
9. 타인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금지
10. 남녀혼숙 금지
11. 생활관 내 금연
12. 생활관 내 애완동물 사육 금지
13. 방카드 타인양도 행위 금지

제 12 조(점검 및 생활지도) ① 점검은 월1회 실시하며 입주생은 생활지도에 따라야 한다.

- ② 학생생활관 내 시설안전·생활상태·위생상태 등의 점검을 위해 점검일정을 사전공지
하고 일정에 맞춰 점검호실을 임의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점검 이외에도 수칙 위반 시 즉시 지도할 수 있다.

- 제 13 조(귀중품 분실 및 재해예방) ① 분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단속을 잘하여 본인의 물품을 사전에 잘 관리하여야 한다.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- ②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생은 항상 건물 내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한다.
- ③ 화재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물품은 생활관 내 사용을 금한다.

구 분	항 목
화재위험물품	전열기 일체(전기매트,온풍기,난로 등),다리미,부탄가스,신나,휘발유 등
취사도구	전기밥솥,인덕션,전자레인지,가스버너,오븐 등

- 제 14 조(시설물 관리) ① 전기·수도·난방장치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생활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한다.
- ② 입주생은 본인 호실의 화기단속과 청결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③ 세탁은 지정된 세탁실에서 하여야 한다.
- ④ 입주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물을 파손 또는 분실 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- 제 15 조(공고 및 게시) ① 입주생은 생활관 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공지사항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모든 입주생이 주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.
- ③ 입주생이 기숙사 내 게시판에 광고 및 게시물을 부착하고자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생활관비

- 제 16 조(생활관비의 종류) 입주생은 다음 각 항의 금액을 생활관비 내역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1. 관리비

2. 식비

제 17 조(납부방식) 현금납부(일시납)만 실시한다.

제 18 조(생활관비)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입·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비를 정한다.

제 19 조(생활관비 환불) 관리비와 식비의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.

구 분	퇴 실	
	퇴실기준	환불금액
관리비	중도퇴사	전체금액-거주기간 동안의 거주비(일자별계산) = 잔여금액 잔여금액에서 위약금 10%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
	입주3/4이후	환불금 없음
식비	환불 시 1식 4,200원으로 계산하여 차액환불	

제 5장 상·벌점

제 20 조(상점 및 포상) 관장은 입주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의 명예를 선양한 모범 입주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포상할 수 있다.

제 21 조(벌점)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1. 경고처분

- 1) 벌점 10점 이상인 경우

2. 퇴사처분

- 1)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

제 22 조(경위서작성 및 제출) ① 수칙을 위반한 입주생은 담당직원과 면담을 통해 그 경위에 대

하여 허위없이 진술하여야 한다.

② 수칙을 위반한 입주생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'수칙위반경위서' 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3 조(상·별점 기준) 상·별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1. 이 수칙은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1. 상점기준

내 용	점 수
비상 상황시 적절한 조치(화재,안전사고 등)	3점
생활관 명예선양	3점
공공장소 청소	2점
습득물 신고	2점
전기·수도 등 에너지 절약실천	1점
외부인 무단 입실자 등 위반행위 신고자	1점

2. 벌점기준

학생생활관 벌점규정

*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는 입실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만약 이를 위반 하였을 시 아래의 벌점규정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.

내 용	점 수
이성간의 혼숙 행위	즉시 퇴실
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	
생활관 내 절도행위	
생활관 카드(열쇠)대여, 무단복제,양도 행위	
기숙사 내에서 음주,흡연으로 인해 타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	
외부인에게 생활관 숙박제공 행위	
인화물질,위험물 반입 또는 전열기 및 가전기기 사용	
동의 없이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	
기숙사 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	
허가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	
복도,공동 주방 등 공동생활공간에 쓰레기를 방치,무단투기하는 행위	5점
생활관 내 학우 간에 폭행을 하는 행위	
생활관 내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	
타인의 우편물을 수취 및 개봉하는 행위	3점
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직원·관리인에게 불응 또는 불손하게행동하는 행위	
방학 중 귀국, 여행 등으로 퇴실 할 경우 열쇠 및 카드 미반납자	
공동주방 및 공동세탁실 이용 시 타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	1점
호실 내 청소상태 및 정리상태가 불량인 경우	
출입카드 및 열쇠 분실자	
지정된 인터넷 IP를 사용하지 않는 자	
허가 없이 광고스티커 또는 유인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	
부재 시 전등 및 냉/난방기를 끄지 않은 행위	
기타 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라 판단되는 경우	